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승객 좌석수를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최대 80석으로 상향하고,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의 경우 납입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함(안 별표 2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의 항공기(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 초과 5만 6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1) 법인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2) 개인 :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별표 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좌석수	승객 좌석수가 80석 이하(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일 것(단,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80석 이하인 항공기의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기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개정규정에 따라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인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223